

IMO 어선안전을 위한 케이프타운 외교회의

I. 일반사항

- 회의명 :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협약 발효를 위한 외교회의
(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an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orremolinos)
- 기간/장소 : '12. 10. 9~10. 11.(3일간)/ 케이프타운 국제 컨벤션 센터 (CTICC), 남아프리카 공화국
- 참석자 : KST 해사안전연구센터 김주환 연구원

II. 주요 의제 목차

- * 회의 개최
- * 의장 선출
- 1. 의제의 채택
- 2. 진행절차 채택
- 3. 부의장 및 관련 사무원의 선출
- 4. 신임장위원회(Credentials Committee)의 선정
- 5. 필요시 기타 위원회 설립을 포함한 회의업무조직 관련 사항
- 6. '77어선안전협약에 대한 '93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시행을 위한 협정서 초안 검토
- 7. 결의서 초안 및 권고 등 관련문제에 대한 검토
- 8. 위원회 보고서의 검토
 - 신임장위원회

- 기타 위원회
- 9. 회의결과에 따른 최종법률 및 기타 기준의 채택
- 10. 회의 최종 법률에 대한 서명

III. 개최 배경 및 목적

□ 개최 배경

- 어선의 안전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을 채택(발효요건: 15개국이상, 선체길이 24미터 이상 전세계 어선총수의 50%) 하였으나 각국의 수락 저조로 발효되지 못함
- 이에 동 협약의 수락을 막는 쟁점 사항에 대한 77년 협약 적용대상을 완화하고, 이와 더불어 77년 협약 채택 이후 새로이 개발된 GMDSS 제도를 협약에 도입할 목적으로 개정된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1993년 채택(발효요건: 15개국 이상, 선체길이 24미터 이상 전세계 어선 총수의 50%인 14,000척) 하였으나 이 또한 발효요건을 현재까지 충족시키지 못함
- 이에 93 의정서 규정의 빠른 시행을 위해 IMO는 의정서 기술요건을 완화하고, 이를 반영한 협정서 초안을 마련하여 MSC 89에서 승인하였고, 협정서 최종 채택을 위한 IMO 외교회의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하기로 106차 IMO 이사회에서 결정함

□ 회의 목적

- 1977년 어선안전 국제협약을 대체하는 1993년

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협정서 및 이와 관련된 결의서 초안을 최종 검토 후 채택하기 위함

IV. 주요 의제 논의 경과 및 결과

1. 회의관련 업무조직 및 위원회 구성

□ 의제 개요

- 회의장 추대 및 선출
- 외교회의의 진행 절차 및 위원회별 의장, 관련 사무원을 선출

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본회의에 앞서 구성된 대표단 회의에서 대다수의 회원국이 외교회의의 주최국인 남아공 대표를 추천하였고, 본 회의에서 Mr. Ben Dikobe Martins가 회의장으로 최종 임명됨

구 분	논의 내용
본회의	- 외교회의의 업무구성 및 일정 결정 - 전체위원회, 협정서 준비위원회, 신임장 위원회 결정사항 검토 - 최종 협정서 및 외교회의의 결의서 최종 채택
전체위원회	- 협정서 관련 제출 의제문서 검토 - 외교회의의 결의서 검토 - 작업반 회의 결과 검토 - 전체위원회 결정사항 본회의의 보고
협정서 준비위원회	- 전체 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본회의제출을 위한 협정안 최종안 작성 - 협정안 준비위원회 검토사항 본회의의 보고
신임장 위원회	- 각 회원국 대표의 신임장 검토 - 신임장 최종 검토사항 본회의의 보고

- 외교회의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함
 - 본회의는 회의장(the President)이 주관함

- 전체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장(Chairman)과 위원회에서 자체 선발된 2명의 부의장(Vice-Chairman)으로 구성함
- 협정안 준비 위원회(Drafting Committee)는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장(Chairman)을 비롯하여 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선발된 9명 이하의 구성원으로 조직함
- 신임장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선발된 5명의 구성원으로 조직함.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(Chairman)을 자체 선출함

2. 93 의정서 이행을 위한 협정서 초안 검토

□ 의제 개요

-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을 위한 협정서 초안 검토 및 본회의 결정을 위한 최종 협정서 준비

□ 의제 주요 내용

- IMO 사무국에서 제공한 협정서 개정 초안을 기초로 아르헨티나, 러시아, 중국, 미국에서 제안한 3가지 협정서 개정안을 종합 검토함
- IMO 사무국은 FAO에서 제출받은 어선 척수 자료와 각국에서 받은 어선 척수 자료를 취합하여 어선 척수에 관한 작업 수치를 제시하였고, 이를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함
 - 취합한 어선 척수: 24미터 이상 어선 척수 9,150척, 24미터 이상 공해 상 어선 척수 7,734척
 - 작업 수치 : 24미터 이상 어선 척수 10,000척, 24미터 이상 공해 상 어선 척수 8,000척
- 전체 위원회의 중 의장은 회의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회원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

협정서 발효요건, 부속서 면제조항 그리고 중국이 제안한 협정서 제2조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그리고 1977년 토레몰리노스 협약 해석 및 적용 수정안에 대한 원활한 합의안 마련을 위해 작업반 개설을 제안하였고, 과반수의 회원국이 이를 승인하여 작업반 회의를 진행함

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가. 전체위원회 1차 논의

○ 협정서 제4조 발효요건 관련 논의

- 협정서 초안에는 다음의 3가지 발효요건이 제시되어있고, 전체위원회에서는 요건별 적절성 검토 후 합의된 하나의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었음

- 1) 제1안: 수락국 15개국 및 길이 24m 이상인 어선 척수 3,000척
- 2) 제2안: 수락국 20개국 및 길이 24m 이상인 어선 척수 1,800척
- 3) 제3안: 수락국 30개국 및 길이 24m 이상인 어선 척수 1,800척

- 유럽 및 아프리카지역의 국가는 협약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서는 발효요건인 가입 국가 및 어선 척수를 최소로 하여야 하므로 협정서 초안에 따른 20개국 및 1,800척으로 하여야 함을 발언함

-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, 일본,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국가들은 IMO에서 제시한 최신 어선척수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 수치가 8,000척으로 증가되었으므로 발효요건 상 어선 척수 1,800척, 3,000척을 2,400척, 4,000척으로 변경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함

- 우리나라는 본 협정서 적용대상 선박이 공해 상

또는 타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운항하는 24m 이상 어선이지만, 발효요건 중 어선 척수 요건은 24미터 이상 어선으로만 되어 있어 법률적 통일성이 부족함을 지적함

- 중국, 일본 측은 “on the high see”를 삽입하지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하였고, 우리나라 또한 제4조 발효 요건에 “on the high see”를 삽입하지는 의사를 표명함
- 전체 위원회에서는 유럽 지역 회원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의견이 상충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본 논의사항을 작업반 회의에서 계속 검토함

○ 협정서 부속서 규칙 3: 면제조항

- 협정서가 공해 상의 어선에만 적용한다는 신규 2조 삽입 및 타국 관할 수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면제를 주장하는 중국 측과 동 사항의 삭제를 원하는 유럽 측의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함
- 결국, 면제 조항에 대한 검토 또한 작업반 회의에서 계속 검토함

나. 작업반 회의 논의

구 분	논의 내용
W/G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정서 제2조 적용, 제4조 발효요건 그리고 부속서 제1규칙 적용, 제2규칙 정의, 제3규칙 면제 조항에 대한 합의안 도출 - 본회의 결정을 위한 협정서 개정 합의안 도출

-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, 중국, 미국, 대만, 사이프러스, 영국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인도, 호주 등이 참석함

○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면제조항과

발효요건에 대한 합의안을 세트로 묶어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함

- 작업반 회의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 제출한 문서를 기초로 하여 각국의 수정안을 더하여 합의안을 마련함
- 작업반 회의를 통해 발효요건은 20개국, 3,500척으로, “on the high sea”를 삼입하고, 면제조항의 적용범위를 타국 관할구역에서 항해하는 선박과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공동 어로수역에서 운항하는 어선으로 확대 하자는 합의점이 일차 도출되었으나,
-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, 중국은 발효요건상 어선 척수를 작업 수치의 50%로 고려하여 발효요건 어선 척수를 4,000척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함
- 하지만 유럽국가들의 반대가 심하여 재논의가 진행되었고, 대체 합의안으로 발효요건 어선 척수를 3,600척으로 하되, 가입국 수는 20개국에서 22개국으로 확대함
- 또한, 잠정적 시행 제도를 의정서 9장에 이어 7장, 8장, 10장으로 확대하여 현존선에 적용하며 유예기간을 9장은 10년 그 외 세 장은 최대 5년간 두기로 함

다. 전체위원회 2차 논의

- 전체위원회에서 작업반 합의사항이 수정 없이 의결되었으며 본회의에서 하기 사항을 반영한 최종 협정서를 채택함
- 협정서 제1조 일반적 의무 및 제2조 1993 토레몰리노스 협약 의정서 해석 및 적용
 - 이 협정서의 발효 시 발생 가능한 93 의정서와의 두 조약이 상충하여 운영되는 상황을 피하고자, 협정서의 조문을 법률적 의미 및 문장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수정함

- 제3조 서명, 비준, 수락 승인 및 가입 일정 확인
 - 이 협정서는 본부의 사무국에서 2013년 2월 11일부터 2014년 2월 10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됨
- 제4조 발효 시기 확인
 - 이 협정서는 22개국이 수락하고 공해 상에서 운항하는 길이 24m 이상 어선의 합계 척수가 3,600척 이상에 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발효함
- 제1규칙 적용 (4)항 수정
 - 이 협정서가 발효되는 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현존선 적용규정의 점진적 이행제도를 제9장(무선설비)에서 제7장(구명설비), 제8장(비상절차 및 훈련), 제10장(항해설비)로 확대 실시결정
 - 이에 따라 제9장은 최대 10년간, 제7, 8, 10장은 최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현존선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규정 이행할 수 있게 함
- 제2규칙 정의 (24)항
 - ‘공동어로구역’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
- 제3규칙 면제 요건 개정
 - 면제 조건을 보다 확대하고, 법률 조문을 정비하여 명확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 완료함.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선박의 전반적인 안전 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으로서
 - i) 인접한 이웃 국가 간 설정한 공동어로 구역에서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, 또는
 - ii) 기국의 배타적 경제수역(EEZ) 내에서 또는 기국이 EEZ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마일을 넘지 않는

지역에서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, 또는
 iii) 국가 간 설정을 동의한 조건 하에, 다른
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
 또는 관련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한 공동
 어로구역의 경계에서만 전적으로 운항
 하는 선박

3. 결의서 초안, 권고안 및 관련 사항 검토

의제 개요

○ 본회의에서 채택할 결의서 초안에 대한 검토

의제 주요 내용

○ 협정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무국에서 준비한 5개의 결의서 초안과 케냐에서 제출한 결의서 초안을 전체 위원회에서 검토완료 후 협정서 준비위원회에 최종안을 준비토록 함
 ○ 협정서 준비위원회에서는 최종 결의서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함

논의 내용 및 결과

○ 회의 결의서 1(협정서의 조기 시행) 채택
 - 조속한 발효와 각국이 협정서를 이행하는데 성공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각 나라가 가능한 빨리 협정서를 비준하도록 촉구함
 - 각 국가는 협정서의 시행을 기다리지 않고 협정서에 따라 비준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
 ○ 회의 결의서 2(두 조약이 상충하여 운영되는 상황의 방지) 채택
 - 어선 안전을 위한 국제체제에 회원국이 되고자 결정한 국가는 1993 토레몰리노스

의정서 관련 별도 가입 조치 없이 본 협정서에 구속됨을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조건에 만족함

- 회의 결의서 3(기술적 협조 촉진과 기술적 지원의 공급) 채택
 - 동 협정서 이행에 적절한 전문가가 부족한 국가들을 지원할 것임
 - 가능한 여러 국가가 동 협정서의 효과적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구함
- 회의 결의서 4(통합 문서 준비) 채택
 - 기구의 사무총장은 아랍어, 중국어, 영어, 프랑스어, 러시아어, 스페인어로 1977 협약서, 1993 의정서, 동 협정서를 통합한 문서를 준비해야 함
- 회의 결의서 5(수탁자에 의한 체약국 어선 척수 계산 과정) 채택
 - 국제해사기구의 사무총장은 수탁자로서 각 체약국의 어선 척수를 결정하는 것이 요구됨을 인식
 - 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 각 체약국의 어선 척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14년 1월 1일까지는 개발해 달라고 요구함
- 회의 결의서 6(개최국에 대한 감사) 채택

4. 최종 합의서 및 규정 그리고 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 및 결의안 채택

의제 개요

○ 본 회의 최종 채택을 위한 협정 초안준비 위원회의 최종 문서임

의제 주요 내용

○ 다음은 본회의에서 채택할 문서 최종안임

- SFV-P/CONF.1/DC/1 : 협정서 최종안
- SFV-P/CONF.1/DC/2 : 결의서 6개안
- SFV-P/CONF.1/DC/1 : 회의구성원, 참가국 및 회의 전반적인 정보

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본회의에서 상기 문서에 대해 이의 없이 최종 승인함

의 제	최종 합의서 서명
-----	-----------

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협정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IMO 결의서를 포함하여 케이프타운 협정서* 채택에 대한 공식 증명으로 회의참가국 56개국 중 53개국이 최종 서명함
 - ※ 최종 협정서 명을 “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규정 시행을 위한 2012 케이프타운 협정서”로 하기로 정함
- 서명, 비준, 수락 승인 및 가입 시기 확인
 - IMO 본부에서 2013년 2월 11일부터 2014년 2월 10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공개하기로 함
 - 상기 기간 이후에도 회원국 협약 가입을 위해 공개되어짐

V. 맺음말

- IMO는 화물선, 여객선에 대한 안전 기준을 어선에 준용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, 이는 어선의 안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회원국이 공감하고 있음
- 93 의정서의 기술적 규정을 보다 완화된 케이프타운 협정서가 최종 채택됨에 따라 동 협정서가 발효되면 관련 원양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수락을 위한 서명 및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
- 또한 발효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. 상기 개정된 사항을 포함한 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기술요건사항 정보를 관련 업·단체에 제공하고, 이에 대한 홍보 요구됨
- 결의서 5에서 수탁자에 의한 체약국 어선 척수 계산과정을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, 차기 SLF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대응 요구됨
- 마지막으로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이 발효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기 국제 협약 기준을 반영한 국내 어선법 정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